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소방청장

I. 시험개요

1. 선발예정인원 : 총 4,482명

- 시도별, 분야별, 성별 선발예정인원 : 『파일 1』 참조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 『파일 2』 참조
 - ※ 법무분야 : 시도별 별도 공고(인원은 파일 1, 요건은 파일 2 참조) → 원서접수는 소방청 일정으로 시행
 - ※ 항공분야 : 소방청 별도 공고(인원은 파일 1 참조) → 원서접수는 별도 시행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이하'공채')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녀공통
합계	4,482	2,601	158	1,231	261	231
중앙	26	0	0	0	0	26
서울	367	261	32	69	5	0
부산	156	100	5	35	9	7
대구	129	62	13	37	13	4
인천	149	90	8	39	4	8
광주	73	45	3	21	4	0
대전	63	23	2	33	5	0
울산	93	20	2	64	6	1
세종	45	10	1	26	4	4
경기	813	463	10	188	68	84
강원	320	205	15	69	21	10
충북	308	216	12	62	7	11
충남	282	155	9	96	10	12
전북	244	119	6	97	18	4
전남	459	253	10	132	25	39
경북	335	224	10	79	20	2
경남	393	233	10	111	30	9
제주	115	56	6	40	6	7
창원	112	66	4	33	6	3

※ 채용분야(응시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소방본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험일정

가. 시험절차별 일정

단계	시험절차	장소 공고일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원서접수(119고시 홈페이지) : '21. 2. 26.(금) 10:00 ~ 3. 4.(목) 18:00 → 취소 : ~ 3. 7. 18시까지				
1단계	필기시험	3. 24.(수) 시도 소방본부	4. 3.(토)	5. 6.(목) 소방청
2단계	체력시험	5. 6.(목) 시도 소방본부	5. 13.(목) ~ 6. 11.(금)	6. 15.(화) 소방청
3단계	인성 또는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제출)	시도 소방본부 별도 발표	6. 17.(목) ~ 8. 20.(금)	개별통보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
4단계	면접시험	시도 소방본부 별도 발표		8. 31.(화) 소방청
※ 필기·체력·서류전형·면접시험(인성 또는 적성검사)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공고 및 운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시도 소방본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시도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예정일
	운전면허	(최초시험 예정일)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경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 예정일)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 : 연기·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나. 응시 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공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2003. 12. 31.
경채	소방사 / 교 / 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2001. 12. 31.
	소방위 / 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1998. 12. 31.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2-1】

마.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대상자 : 공채분야 소방사, 경채분야 소방장 이하)

4. 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필기시험 적용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수정(추가)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점과 자격증 등의 가점은 각각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 상기 모든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정지, 취소, 기간만료) 불인정				

II .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 홈페이지(^{인터넷 접수}http://119gosi.kr) → 이하 '119고시'

- 접수기간 : **2. 26.(금) 10:00 ~ 3. 4.(목) 18:00**
↳ 취소기간 : 3. 7.(일) 18:00까지(주말·공휴일 취소 가능)
- 응시지역(분야) : 원서접수 시 응시자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
- 거주지(주민등록상) 제한 없으나,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주말·공휴일 접수 가능)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함
→ 이후 시간 접수불가
-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 확인

나. 응시수수료 :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취소 또는 반환 시 추가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계 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 교	5,000원
소방장 / 위 / 경	7,000원

- 모든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자로 간주
-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처리
-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만 환불
-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만 반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반명함(3cm×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 본인얼굴 식별가능 해상도
-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은 등록불가 및 불인정
 -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 등록
 - ↳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 사진은 요구 시 교체
- 채용시험 단계별 동일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본 보관,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교체 불가

라.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 진행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 가능하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운전면허 미취득자는 원서접수 시 ‘취득예정’ 선택
 - ※ 예시 : 1종 보통이상 ① 취득자 ② 취득예정자*
 - * 취득예정자는 면허취득 후 필기시험 전일(18:00)까지 파일등록 가능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

- (공 통) ① 사진 ②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및 경찰청 발급 가능)
- (해당자) ③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록증 ④ 자격증(면허)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원서접수 결과 공개

가. 일 시 : **3. 10.(수) 14:00** / 119고시 홈페이지

나. 내 용 : 지역별, 공채·경채 경쟁률

3. 원서접수 시 신청된 가점 확인기간 운영

- 가. 기 간 : 3. 26(금) 14:00 ~ 28.(일) 18:00 / 119고시 홈페이지
- 나. 대 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증 및 면허증, 사무관리
- 다. 방 법 : 119고시 → 로그인 → 성적조회
- 라. 이의제기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 글쓰기 → 응시시도 선택 → 제목작성(가점 이의제기)
- 마. 원서접수 이후 신청된 가점은 개별 안내

Ⅲ. 시험절차

1. 1단계 : 필기시험

가. 장 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 응시표 출력 : 3. 24.(수) 14:00~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나. 시험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1선택형

공채 10:00 ~ 11:40 (100분)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경채 10:00 ~ 11:00 (60분)	소 방 사(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장(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5)과목*으로 변경 및 조정점수 적용 폐지

* 필수(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다.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붙임 4】
소방관계 법규	공채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채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사 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

※ 2020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됨

라.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 문제지 및 가(정)답안 공개 : **4. 3.(토) 16:00** / 119고시 홈페이지
- 이의제기
 - 기간 : **4. 3.(토) 16:00 ~ 4. 4.(일) 24:00**
 - 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신청
 - 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붙임 5】**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만 가능
 - 내용 :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마. 필기시험 점수(원점수, 가점) 공개 및 이의제기

-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 **4. 30.(금) 14:00 ~ 5. 3.(월)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로그인 → 성적조회)
- 공개 및 이의제기 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 이의제기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 글쓰기 → 응시시도 선택 → 제목작성 → 점수 이의제기 서식 작성*

* 점수 이의제기 서식	제목 작성 방법 : <i>(서울) 점수 이의제기</i>			
	1. 응시번호 / 2. 응시자 성명			
	3. 사전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가점 00)			
	4. 본인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가점 00)			

- 답변방법 : **5. 4.(화)한** / 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바.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아래 범위에서 합격한 자

분야	공채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소수점 반올림)	1~50명	3배수	1~5명	3배수
	51~100명	2.8배수		
	101~150명	2.6배수	6~10명	2.5배수
	151~200명	2.4배수		
	201~250명	2.2배수	11명 이상	2배수
	251명 이상	2배수		

-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 합격

- 조정점수 :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7 참조)

2. 2단계 : 체력시험

가. 일시/장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 【붙임 6】

다. 측정방법 : 【붙임 6-1】

라. 이의제기 운영 : 당일 시험관리위원회(관정관 전원참여) 개최 후 결과 통보

마. 도핑테스트

- 대상자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소수점 절사) 무작위 선정
-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 나온 경우
 - 부정행위자 처리 【붙임 11】 또는 면책신청 가능
-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 7】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7-1】
 - 응시자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 【붙임 7-2】
 - ↳ 이의제기 시 :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 구성 및 운영

바. 합격자 결정

- 6종목 점수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3. 3단계 : 인성 또는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서류전형

<인성 또는 적성검사>

- 가. 일시/장소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 나.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소집검사)
- 다. 검사결과 :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제공

<신체검사>

- 가. 제출일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 나.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다. 검사방법 :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붙임 2-3】 중 시도소방본부 안내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후 해당일까지 해당 시도소방본부에 제출
- 라.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붙임 2-2】
- 마.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2】
- 바.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1】
- 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날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 색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응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색각경 검사결과지를 신체검사 병원에 제출하여 신체검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람 → 색각경 검사 병원【붙임 2-4】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 처리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 신체검사서류 제출 첫째날)

<서류전형(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다.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경력 등)가 적합한 자

라. 제출서류

공통사항(공채, 경채)	경채분야별	개별사항
①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②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정부24) - 최근 5년 이내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기타】 해당자만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응급구조학과	① 졸업증명서
	소방관련학과	① 졸업자(2~4년제) : 졸업증명서 - 미졸업자(4년제)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의무소방	① 의무소방원 복무 확인서 -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 증명서에 필히 전역예정 명시
	구조 구조(수난) 구조(항공)	① 군경력증명서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경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참조) ②-1 (수난) 필요시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수료 증명
	법무 (소방경)	① 공통사항 중 ①③만 제출 ② 사법시험합격증,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면허증 중 1가지
	학력분야 (박사, 석사, 학사)	①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전부) ② 성적증명서(해당자만) 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공공경력	① 경력증명서 ① 경력증명서 - 의무병,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자격(면허)증 사본
	자격(2년)경채	【기타】 해당자만 ⑤ 갑근세증명서 ⑥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붙임 8-1】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⑦ 근로계약서 ⑧ 승력경력증명서
○ 상기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기준일 : 공고일('21.2.24.) 이후 발급분 인정(신체검사서 제외) ○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4. 4단계 : 면접시험

가. 장 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지정 장소)

나. 대 상 : 신체검사 합격자

다.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라. 합격자 결정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최종 합격자 결정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항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면접시험만 실시 : 면접시험 100%
- 실기, 면접시험 실시 : 실기 75% + 면접 25%
- 필기, 면접시험 실시 : 필기 75% + 면접 25%
- 필기, 체력, 면접시험 실시 : 필기 75% + 체력 15% + 면접 10%

나.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합격증명서 발급

○ 신청기간 및 장소 : 9월중 / 소방청 발급

○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 장당 200원

Ⅳ.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및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시험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가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2. 원서접수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 **【붙임 3, 3-1, 3-2】**

- 원서접수 시 대형면허 소지자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점 적용란에 대형면허 자격을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 일 18:00까지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입력(119고시 홈페이지)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 제출처 : 119고시 홈페이지

○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시험절차에 응시할 경우 신분증, 응시표,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붙임 1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각 시도소방본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을 확인 바랍니다.

○ 잘못된 서류를 제출(파일등록)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내에서 대변·소변시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실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하며, 아래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수정테이프를 응시자간 상호 주고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시험감독관에게도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필기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시험 중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통신장비 전원 OFF)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는 아날로그 시계 및 수능시계를 가지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4. 체력시험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장갑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맨손 및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미끄럼방지가루 또는 코팅장갑 사용 가능)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체력시험 종료 후 당일 영상삭제)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시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전 종목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왕복오래달리기 마스크 미착용 가능)

5.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진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서류제출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붙임 8】참조 하십시오
-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가능)만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週)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8-1】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8.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시도별 시험운영 연락처 및 공고 홈페이지

시도별	전화번호	주 소 (공고 관련 시도 홈페이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1~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1~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031-329-032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https://119.gg.go.kr/academy)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4	충북 청주시 상당로 82 (https://www.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63	충남 홍성군 흥복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총무과	063-280-230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2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www.sobang.kr/index.sko)
전남 총무과	061-286-3371~6	전남 무안군 오룡길 1 (http://namdo.jeonnam.go.kr/sihum/)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2 054-880-615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1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행정과	055-548-93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 붙임
1. 응시결격 사유 등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2-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2-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 2-4. 소방공무원 색각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 3-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3-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1부.
 4.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5.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서 1부.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6-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7-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7-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 7-3.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분야) 1부.
 - 8-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1부.
 - 8-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 8-3.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1부.
 - 8-4.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9.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부.
 10.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3.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 1부.
 14.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아래의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수치로 기재)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u> 이상인 사람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2-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1)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

검 사 내 용

신	장			체	중			kg	
		cm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		질 환			
치		아		호흡기		질 환			
간		질 환		신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		검사(매독)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input type="checkbox"/>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input type="checkbox"/> 불	합	
	<input type="checkbox"/> 판	정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3	경찰병원(국립)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5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7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8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11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2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4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5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025	
1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7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18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1544-9004, 내선번호2	
19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114	
2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1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2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한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전하동)	052-250-7000	
23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114	
24	의료법인 헤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신정동)	052-259-5000	
25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26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0777, 0294	
27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33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28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448, 9274	
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30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043-279-2300	
32	청주 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666	
33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200	
34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570-1111	
35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000	
36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7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114	
38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39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0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1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42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43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44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45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46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4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4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4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지1,1~5,7층 (충무공동)	055-759-7777	
50	창원경상대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5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350	
52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1	'21년 3월 병원이전으로 주소,전화번호 변경 예정
53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54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5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2-4

소방공무원 색각검사 지정 종합병원

구분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길 82	031-787-2114
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446

-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색각 관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에 명시한 종합병원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 적용범위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등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범위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가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3-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 격 증 (면허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의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3-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5퍼센트	기능장	기사 3퍼센트	산업기사 1퍼센트	기능사	
14 건설 (6/98)	141 건축 (29)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블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46 건설기계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블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6 기계 (7/79)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164 조선 (6)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165 항공 (8)	항공기관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166 자동차 (8)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그린전동자동차 정밀화학			
	18 화학 (2/12)	181 화공 (9)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화학분석	
182 위험물(3)		위험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위험물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20 전기·전자 (2/39)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 (23)		광학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광학기기	광학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카드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212 방송·무선 (6)	정보보안	정보보안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213 통신 (10)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가스 건설안전	가스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화재감식평가			
252 비파괴검사 (15)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26 환경에너지 (2/37)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5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	(성명) _____ (응시번호) _____
연 락 처	• 휴대전화 : _____ • 이 메 일 : _____
응시분야	• 응시시도 : _____ • 응시분야 : _____
질의과목	• 해당과목 : _____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p><출제문제></p> <p><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p> <p><응시자 의견></p>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시간제(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이 규정에 의한 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의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 임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8-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1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 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해당 시도기관장 귀하

8-3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78	구급	서울	소방사	일반경력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고자료4)	
2	주민등록 초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자격증 사본	
6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7	연구실적	
8	특허실적	
9	학위논문	
10	근로계약서	
11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택 1)	
12	기타 실적 관련 서류	

8-4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접시험 방법

① 제1단계 면접(집단면접)

- 10명 내외로 1개조 편성
- 조별 순차적으로 면접대기실에 입실
- 면접번호 부여, 면접번호 패용(조별 절반씩 A, B로 구별)
- 각 조별 면접시험장 동시 입실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성명, 나이, 학력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없이 면접 실시(블라인드 면접)
-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자료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3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10	8.5	7	5.5	4	2.5	1
②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10점)	10	8.5	7	5.5	4	2.5	1
③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10점)	10	8.5	7	5.5	4	2.5	1

② 제2단계 면접(개별면접)

- 면접위원에게 인성 또는 적성검사 결과 자료 배부
- 응시자는 명찰(성명 및 수험번호)을 패용하고 입실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성 또는 적성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응시자에게 질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2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20	17	14	11	9	6	3
②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10	8.5	7	5.5	4	2.5	1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응시계급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1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소방청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 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최근 10년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포함)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12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불대학교	소방학부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		한영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전공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경원전문대학	소방시스템과		벽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주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창신대학	소방방재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계열 소방행정공무원 전공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부산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군장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관리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소방공학사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2013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창원전문대학	소방방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대불대학교	소방학부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보건 과학대학교	경찰소방행정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전공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소방공학사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경원전문대학	소방시스템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벽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한영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		전남도립남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군장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경상대학	소방행정공무원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과		창신대학	소방방재학과					
2014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과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송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	소방행정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	설비소방전공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5	세경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교	소방행정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교	설비소방전공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교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6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대전보건대	재난시설안전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전공	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엘린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전남도립대	소방전공학과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			
2017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창원문성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018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2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관리전공	2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4년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4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가평생교육원	소방학 전공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일반반·사회맞춤형반)	2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학과	4년			
2019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경찰소방과	2년제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관리전공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야간)	2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소방학전공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3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4년제				

2020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정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 전기전자계열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2021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정공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조선대학교	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관리전공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주간)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주간)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 공학과	2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산업대학)	4년제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안전관리전공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행정공무원전공	3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부 소방학전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 비교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